

의안번호	2210732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7.28.
추계번호	25D3100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을 둠 -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역중수청”이라 함)을 둠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중수청에 중수청장을 두며, 중수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중수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과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포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차장)	중수청에 차장을 둠	의무규정
5	안 제9조(직제)	- 중수청의 직제는 국·부 또는 과로 함 - 중수청 직제의 명칭 및 분장 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6	안 제10조(지역중수청장)	지역중수청에 지역중수청장을 둠	의무규정
7	안 제11조(직제)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8	안 제12조(수사관), 제14조(수사관의 자격) 및 제15조(수사관의 임용)	- 중수청에 수사관을 둠 - 수사관의 직급은 중수청장, 차장, 수사1급부터 수사 7급까지로 함 -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 수사관의 직급은 중수청장, 차장, 수사1급부터 수사 7급까지로 함	의무규정
9	안 제20조(인사위원회)	-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수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수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과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	의무규정
10	안 제21조(정원)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수사관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1	안 제27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 중수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음 - 중수청 직원의 직제, 정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2	안 제31조(수사심의위원회)	-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둠 -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 위원을 과반으로 함	의무규정
----	-----------------	--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3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 추천위원회)	
4	안 제8조(차장)	
5	안 제9조(직제)	
6	안 제10조(지역중수청장)	
7	안 제11조(직제)	
8	안 제12조(수사관), 제14조(수사관의 자격) 및 제15조(수사관의 임용)	
9	안 제20조(인사위원회)	
10	안 제21조(정원)	
11	안 제27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12	안 제31조(수사심의위원회)	

2. 상세 사유

□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역수사청 설치·운영

- 제정안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지역중수청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및 청사마련비 등이 발생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부칙 제3조¹⁾에서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의 소관사무 중 중수청에 해당하는 사무는 중수청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고, 중수청 직원의 직제, 정원, 중수청의 분장사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중수청·지역중수청의 규모 및 정원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중수청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검찰청 수사관의 1인당 직급별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수사관 및 공무원의 1인당 직급별 보수(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수사관 1급(고위공무원단)	92,981	9,000	1,680	480	104,141
수사관 2급(고위공무원단)	85,565	7,800	1,680	480	95,525
수사관 3급(공안직)	78,007	6,000	1,680	480	86,167
수사관 4급(공안직)	69,253	4,800	1,680	480	76,213
수사관 5급(공안직)	59,762	3,000	1,680	480	64,922
수사관 6급(공안직)	51,163	2,220	1,680	480	55,543
수사관 7급(공안직)	43,399	2,160	1,680	480	47,719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 8급(공안직)	35,936	2,100	1,680	480	40,196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 9급(공안직)	30,593	2,100	1,680	480	34,853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1~4급 20호봉, 5~6급 18호봉, 7급 15호봉, 8급 12호봉, 9급 10호봉 기준(성과급 지급 시 적용되는 호봉 기준)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3조(조직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해당하는 사무는 중수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검사의 소관 사무 중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검사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중수청장의 행위 또는 중수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go.kr